

의안번호	제 2008 - 10 호
의 결	2008. 7. 8.
연 월 일	(제9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차

l. 3	제1팀 회의
1	. 제13차 회의 ······ 1
2	. 제14차 회의2
3	. 제15차 회의 ······ 3
II.	제9차 전체회의
1	. 일시·장소 ···································
2	참석자 ······· 5
3	. 주요 안건
4	. 보고서 제출 현황5
5	. 회의 요지6
	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6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다.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12
Ш.	향후 일정1



I. 제1팀 회의

1. 제13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6. 13.(금) 17:00 ~ 18:30

○ 장소 : 대법원 410호 회의실

나. 참석자(7명)

- 전문위원 김한균, 김현석, 이주형, 이호중
- 운영지원단장(간사)
- 윤정근 판사, 선창민 통계분석실무관

다. 주요 안건

○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

라. 회의 요지

- 운영지원단에서 강간범죄, 강도범죄, 강제추행범죄, 사기범죄, 살인범죄, 절도범죄 등의 양형인자를 정리한 자료를 배포
- 이주형 전문위원은 범죄유형별로 개별 양형인자의 변동에 따른 형량 범위 등 세부적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이에 대하여 다른 전문위원들은 제1팀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의 양형현황에 대한 분석은 양형의 거시적 적정성에 대한 분석 이 목적이고, 세부적 분석은 설정대상 범죄가 정해진 후 양형기 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2. 제14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6. 19.(목) 10:30 ~ 11:2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전문위원 김한균, 김현석, 이주형

○ 운영지원단장(간사), 윤정근 판사

다. 주요 안건

-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라. 회의 요지

(1)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

- 김한균 전문위원은 과제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분석을 진행 하면 충분하고 개별 과제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함
 -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석은 2008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라 2팀 과제에 해당하므로 원칙대로 2팀에서 진행하는 것 이 타당함
- 이주형 전문위원은 망라적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범 죄 수준결정이 가능할 정도로 분석을 진행하고, 아울러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대하여 김한균 전문위원은, 통계전문가 자문단이 1팀

양형분석 연구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어렵고, 양형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자문단은 전문위원 연구과 정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

(2)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 김한균 전문위원은, 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 ② 부당한 양형편차가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범죄, ③ 향후 다른 기준설정 시 참조가 될 수 있는 기본적 범죄, ④ 형종과 형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범죄, ⑤ 기준설정이 용이한 범죄, ⑥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 등의 기준별로 1개정도의 범죄를 선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힘

3. 제15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6. 26.(목) 14:00 ~ 17:3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나. 참석자(6명)

- 전문위원 김현석,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 운영지원단장(간사), 윤정근 판사

다. 주요 안건

-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라. 회의 요지

(1)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

- 김현석 전문위원이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통계현황」 발표
- 이주형 전문위원은 외부 통계전문가를 자문단 방식 등을 통하여 통계분석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통계 분석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형기준 설정 시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대하여 운영지원단장은, 전문위원단에서 양형현황 분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단에 전혀 요청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법에 정해진 시한을 쉽게 무시하거나 분석을 위해 막연히 시간 연장을 요청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 설정 대상 범죄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김현석 전문위원은,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는 ① 살인, ② 강간, ③ 강도, ④ 뇌물, ⑤ 위증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주형 전문위원은, 망라적 양형기준을 일시에 설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주요 형사범, 뇌물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하 여 동시에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호중 전문위원은, 대상 범죄 선정은 정책적 문제이므로 국민적 관심도, 발생 빈도 등 기준에 따라 10개 정도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그중 선택되도록 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진선미 전문위원은, 양형기준 형태가 정해진 후 대상 범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Ⅱ. 제9차 전체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6. 30.(월) 14:15 ~ 19: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4명)

○ 전문위원 김소영,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박형관, 서보학, 손철우, 이주형, 이천현, 이호중, 조은경, 진선미, 최석윤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

4. 보고서 제출 현황

전문위원	제목
김현석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통계현황 분석
김현석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의 선정
손철우	양형기준시안 보고, 양형기준시안 적용
박형관	종합적·체계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관한 개별 의견

☞ 각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별첨자료 참조

5. 회의 요지

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1) 박형관 전문위원 발표

- 박형관 전문위원은, 특별팀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의 쟁점으로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등 3가지로 나눈 점과 '망라적', '개별적' 양형기준으로 개념을 정의 내린 점 등은 부적절하고, 종합적·체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단편적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종합적 양형기준제의 의미는 양형기준 내에 양형의 일관성, 비례성 등 양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등을 구 비한 기준제로서, ① 양형개혁의 목표, 원리에 대한 집중적 논의, ②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마련(일괄 마련), ③ (대부분) 범죄 상호간의 우열을 정리(대부분 범죄에 대한 기본 범죄 수준 도출, ④ 주요 양형인자의 계량화, ⑤ 중간제재형이나 가석방 혹은 보호관찰 취소 기준의 고려, ⑥ 과거 및 현재의 양형실태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구축 계획의 마련, ⑦ 양형기준 시행 후 적용실태에 대한 모니터 링 방안 마련 또는 마련 시도 등이 종합적 양형기준제를 구 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
 - 또한 위와 같은 종합적 양형기준제 설정을 위한 의사 결정을 위하여, ① 범죄등급란의 개수, 셀 내의 상·하한 폭의 결정, ② 기본 범죄수준의 결정 및 범죄의 서열화, ③ 등급간 이동 방식의 선택 여부, ④ 다수 범죄(경합범) 가중 방식, ⑤ 구금 형과 비구금형의 구별 기준, ⑥ 양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양형기준 모니터링, ⑦ 교정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려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단과 운영

지원단에서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하여 특별연구팀 팀장인 이호중 전문위원은, 양형의 일관성, 비례성 등 양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를 구비한 양형기준을 만들자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는 것이고, 특별연구팀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와 같은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쟁점 을 정리하고, 개념을 정의 내렸다는 입장을 밝힘
- 조국 전문위원은 서면 의견을 통하여, 보다 많은 별도의 연구 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웬만한 중요한 쟁점은 다 검토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작성을 위한 실제 적 준비로의 전환을 준비하여야 하고, 만약 1기 양형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한다면 위원회와 전문위원 모 두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수석전문위원은, 특별연구팀이 정리한 쟁점과 개념에 기초하여 지난 2개월 동안 전문위원단 토의, 양형위원회 심의 및 공개 토론회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와서 쟁점 등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2) 손철우 전문위원 발표

○ 손철우 전문위원은, 이미 제출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 준제」 보고서에서 주장하였던 양형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작 성한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시안의 특징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 결과를 설명함

(3) 쟁점별 전문위원 의견

(가) 쟁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개별적 양형기준 v. 망라적 양형기준

■ 개별 양형인자의 계량화 방식 및 정도

○ 등급조정 격자형 v. 등급조정 격자형(재량적 양형인자) + 서술형(법률상 양형인자) v. 유형 분류 +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 양형기준 설정 순서

○ 동시(일괄) 설정 v. 점진적 설정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 곽동우, 조국 전문위원은 쟁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
- □ 진선미 전문위원은 현 단계에서 개별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시범적으로 몇 개의 범죄를 정하여 여러 유형 혹은 방식의 양형기준 시안을 만들어 검증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선행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양형기준 방식과 양형기준 대상범죄를 선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나)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다수의견(12명) : 개별 범죄유형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 설정
 - 전문위원 곽동우, 김소영,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서보학, 손철우, 이천현, 이호중, 조국, 조은경, 최석윤
 - ☞ 김용철 전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망라적 양형기준을 지지

하나 현실적으로 개별적 양형기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최석윤 전문위원은,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은 법 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 하여야 하고 경합범을 포함한 법률상의 가중/감경과 재판 상의 감경뿐만 아니라 벌금형과 자유형, 선고유예여부, 집 행유예여부 등을 포함하는 형종과 형량의 결정을 모두 규 율하여야 하는데, 우리 형법에는 이미 이에 관한 명문규정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과 저촉되는 양형기준을 설정 할 경우에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그렇다고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수준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지금 진 행되고 있는 형법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정된 형법규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양형기준설정은 형법개정작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대다수 범죄의 양형실태에 대 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범죄별 또는 범죄유형별 양형분포 를 파악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규범적 조율을 통해 전체 적인 범죄수준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하고, 이러한 밑그림 이 마련된다면 개별적 양형기준이든 종합적 양형기준이든 상관이 없으나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이고 점진적인 양형기준 설정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u>소수의견(1명)</u> : 원칙적으로 <u>설정</u> 대상 범죄 전체에 통일적 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 설정
 - 전문위원 이주형
 - ☞ 다만 이주형 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망라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제 성립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입장은 종합적인 의미에서 '주요 범죄들에 대해 범죄서열

화가 가능한 형태로서 설정될 범죄들에 대해 실형과 집행 유예 기준 및 경합범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 는 양형기준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 박형관 전문위원은,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범위'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이므로 이를 토대로 망라적 또는 개별적이라고 의결함은 부적절하고, 최초 양형기준으로 적용하는 범죄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에 서는 경우 형사범의 70% 또는 80%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별 의견을 밝힘

(다) 개별 양형인자의 계량화 방식 및 정도

- <u>다수의견(9명)</u> : 유형분류 +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가중인자/ <u>감경인자, 특별인자/일반인자 등)</u>
 - 전문위원 곽동우, 김소영, 김한균, 김현석, 서보학, 손철우, 이천현, 조국, 최석윤
- 소수의견(2명) : 등급조정식 격자형
 - 전문위원 박형관, 이주형
 - ☞ 박형관 전문위원은 등급조정식 격자형을 등급미조정식 격자형보다 선호하며, 자신의 입장은 '주요 양형인자의 계량화'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
 - ☞ 이주형 전문위원은 그동안 등급조정식 격자형 모델의 채택을 주장하였으나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양형 인자의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 그러나 '주요 양형인자의 계량화'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 하고, 현 단계에서의 논의는 양형인자를 계량화할 것인 지 여부와 만약 양형인자를 계량화한다면 그 방식을 어

떻게 할 것인지에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쟁점을 파악하는 경우 박형관, 이주형 전문위원은 모두 등급조정식격자형 모델을 지지하고 있음

- <u>소수의견(2명)</u> : 재량적 양형인자는 등급조정이 가능하도록 계량화하고, 법률상 양형인자는 서술
 - 전문위원 김용철, 이호중
- 조은경 전문위원은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보류함

(라)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

- 다수의견(12명) : 점진적 설정
 - 전문위원 곽동우, 김소영,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서보학, 손철우, 이천현, 이호중, 조국, 조은경, 최석윤
- 소수의견(2명) : 동시(일괄) 설정
 - 전문위원 박형관, 이주형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김현석 전문위원이, 배포된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의 선정」 에 따라 발표
 - 김현석 전문위원은, 양형통계의 분석결과, 범죄의 발생빈도, 사회적 관심사 등을 종합하여 제1기 양형위원회 설정 대상 범죄로 ① 살인죄, ② 성범죄, ③ 강도죄, ④ 뇌물죄, ⑤ 위증죄, ⑥ 사기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됨
 - 김한균, 이주형, 이호중 전문위원의 의견은 제1팀 제14차, 제 15차 회의 내용 보고와 같음
 - 손철우 전문위원은 김현석 전문위원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사기범죄의 경우 행위 태양이 다양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김용철 전문위원은 김현석 전문위원이 제시한 범죄 이외에 횡 령죄, 배임죄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

- 김현석 전문위원이, 배포된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통계현황 분석」에 따라 발표
 - 개별 양형인자가 형종,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미시적 통계분석과는 다른 차원에서 『32개 범죄유형별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양형실무의 전체적 모습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계 분석
- 제1팀에서 통계 분석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됨
 - 이주형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형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위원들 대부분이 통계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양형과 통계를 아는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호중 전문위원은 양형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 준제 결정은 분리할 수 있고, 현재 제1팀의 분석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지석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또한 어느 정도 완성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전문위원들 중 통계분석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전문위원 3명정도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양형현황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손철우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결정을 위해 서는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통계분석이 필요한데, 이미 운영지원단과 김현석 전문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그정도의 분석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더 세밀한 분석은 설정대상 범죄가 정해진 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팀을 구성하더라도 제1팀과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운영지원단이 개별 범죄유형별 분석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운영지원단장은 이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행한 수준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1팀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운영지원단이 제공한 분석 결과와 범죄유형별 분석을 완료한 김현석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양형현황을 파악하거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를 선정함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범죄의 양형분석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운영지원단에서는 개별 범죄의 양형분석을 위한 기초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운영지원단에 분석 업무를 맡겨주시면 시행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
- 조은경 전문위원은 2008. 5. 27.자 양형위원회 8차 회의자료 집에 있는 운영지원단의 최종 분석 보고서는 양형인자별로 세심하게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에 대한 해설까지 부기하고 있으므로 양형현황을 분석하기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분석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통계지식이 부족한 전문위원들로서는 어떠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하여 요청하기 어려운 것

- 이 현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최석윤 전문위원은 양형편차의 유무는 실제로는 운영지원단에 서 시행한 것과 같은 교차분석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오히려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통계학상 양형인자 사이에 우선순위 정도는 정할 수 있으나,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없고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 만들 때 통계분석결과를 놓고 정책적 결단을했을 뿐이지 통계학 방법론상으로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1팀에서 전체 회의 이후 통계 분석의 주체, 방법 등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였으나 특별팀 구성, 전문가 파견, 운영지원단에 의 한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서의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다음 번 양형위원회 회의 때 보고 드리고자 함
 -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 이후 제1팀에서 추가로 논의가 진행된 내용은 의결안건에 대한 설 명자료 부분에서 요약함

Ⅲ.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0차 전체회의 일정은 양형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함